

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4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4월 29일

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경기침체와 유통산업의 개방, 쇼핑문화의 변화 등으로 상권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어
- 재래시장을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- 토 지 : 3필지 566 m^2
- 건 물 : 2동 376.78 m^2 (지하 1층, 지상 2층)

※ 보상후 멸실조치

- 예정가격 : 315,893천원(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)

[처분재산]

- 건 물 : 2필지 376.78㎡(지하1층, 지상2층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,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.
- 따라서,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고, 건물 2동은 보상후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